

의안번호	제 415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349 회)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6년 6월 29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1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6월 29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가 액면금리에 근접하여,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 유통시장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,
-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대상을 규정한 상위법령이 폐지·신설되어 관계법령을 현행화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조정(안 제6조제2항)
 - 종전) 연 2.0% 복리
 - 개정)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라 연복리로 정함.
- 관계법령 현행화(안 제8조의 별표 2 제2호라목)
 - 종전) 「농어촌특별조치법」 제2조
 - 개정)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3조제1호, 제2호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, 제2호,
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, 제3호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체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지역개발기금(이하“기금”이라 한다”를 “지역개발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연 2.0% 복리로 한다”를 “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라 연복리로 정한다”로 한다.

별표 2 제2호라목 중 “「농어촌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의한다”를 “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·제2호,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·제2호,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(이하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「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」(이하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 -----(이하“기금”이라 한다)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공채의 발행기간 및 이율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공채의 발행이율은 <u>연 2.0%</u> 복리로 한다.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	<p>제6조(공채의 발행기간 및 이율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라 연복리로 정한다.</u>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공기업법

제19조(지방채 등) ① ~ ② <생략>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·허가·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
2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(出捐)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
3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·수리·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

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, 매입 대상별 금액, 채권등록 방법, 이율 및 상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농업"이란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2. "농업인"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3.~11. <생략>

□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<생략>
 - 가. 어업: 수산동식물을 포획(捕獲)·채취(採取)하거나 양식하는 산업,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
 - 나.~라. <생략>
2. <생략>
3. "어업인"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

자원을 포획·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4.~9. <생략>

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임업"이란 영림업(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과 「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·운영을 포함한다), 임산물생산업, 임산물유통·가공업,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.
2. "임업인"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

3.~8. <생략>